

(이용대상)

효자손재가복지센터의 이용대상자는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재가급여 수급자 또 관할 관청이 서비스제공을 의뢰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1. 효자손재가복지센터의 이용정원은 정함이 없다.
2. 이용자 모집방법은 효자손재가복지센터 자체 홍보 및 지자체 등 의뢰를 통해 모집한다.

(이용계약기간 및 재가 이용료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재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단, 계약기간 내에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이용계약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의 이용 서비스를 통하여 다양한 이용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장기요양수급자(보호자)의 이용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급여제공계획서 작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4. 월 이용료와 기타 비용부담액은 당해연도 고시금액에 의하며, 장기요양보험수가 변동에 따라 개인부담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
5. 월이용료는 당해 연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정해진 금액을 매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현금납부, 이용료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6. 기타 비용부담액(비급여항목) : 센터는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외 기타비용부담액(비급여항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비급여항목은 다음과 같다.
 - 이용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병원진료 등 본인이 비용부담.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사항)

1. 본 센터의 계획에 의해 실시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진행하되,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과 그 지불방법에 대하여 이용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국민기초수급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용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요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서비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발생은 이용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은 계약서의 재작성을 통해 이뤄지며, 센터은 재계약서 작성에 대한 공지를 이용자 혹은 보호자에게 방문, 유선을 통해 변경사유 및 기간, 비용 등을 사전 설명한 후 작성한다.

(서비스 내용 및 그 비용부담과 신원인수인 등에 관한 사항)

1. 효자손재가복지센터의 이용급여 계획에 의해 실시되는 서비스는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진행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이용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재가서비스 결정 이용시 진료위임 및 동의, 이용비용, 주보호자 변경 등 이용자에 대한 주보호자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4. 본인부담금의 오류로 인한 반환금 발생을 대비하여 계약서상의 보호자나 이용자 본인을 반환금 수취인으로 한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제공자에게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누락하였을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였을 때
7. 이용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계약해지 신청을 하였을 때
8. 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등급이 등급외자로 변경되었을 경우
9.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시설입소 원할 경우)